

제315회 임시회

2012. 10. 15(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2년 9월 27일

나. 회부일자 : 2012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12. 3. 17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제3조)

나.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라. 안전 심의 등을 위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5. 검토내용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도에 위임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입법예고(2012. 8. 17 ~ 9. 6)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조문상호 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 조문의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바,
-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수기로 제작된 종이지적이 측량기술의 발달에 따른 실제 토지 현황과 불일치하므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